

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982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7년 8월 14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가. 기금의 존속기한('17.12.31)종료 예정에 따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필요

※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: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.

나. '17. 4. 1자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변경

2. 주요내용

가. 중소기업육성기금 존속기한을 5년 연장

○ 조례 제3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

- 2017년 12월 31일 →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

나. '17.4.1일자 서울시 조직개편사항 반영

○ 조례 제9조(기금운용심의회 구성)제2호

- 민생경제과장 → 공정경제과장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협의사항

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신설·강화 규제사항 없음

(2) 민관협력담당관(위원회): 해당 없음

(3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해당 없음

(4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원안동의

(5) 여성정책담당관(성별영향분석평가): 원안동의

(6) 갈등조정담당관(갈등영향분석평가): 원안동의

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
실·본국·국 협의 사항: 해당 없음

라. 기타

(1) 입법예고 (2017.6.22. ~ 7. 22.) 결과: 의견 없음

(2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첨

(3) 규제심사 결과: 규제심사 대상 아님

(4) 비용추계 등 자료: 별첨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 본문 중 “2017년 12월 31일”을 “2022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9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공정경제과장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4. 신·구조문 대비표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	제3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----- ----- 2022년 12월 31일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9조(기금운용심의회 구성) ① (생략) ② 위원장은 기금운용관이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 1. (생략) 2. <u>민생경제과장</u> 3. (생략) ③ (생략)	제9조(기금운용심의회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<u>공정경제과장</u> 3.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
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: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 :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
제3조제1항1호

3. 미첨부 사유 :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에 해당
- 기금 존속기한 종료 예정에 따른 기금 존속기한 연장 및 조직개편에
따른 부서명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발생 요인 없음

4. 작성자 :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이정순(2133-5550)